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1월 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1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1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올림픽체육과장)

#### 가. 제안이유

- 신설된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나. 주요내용

-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안 제11조1항 별표1) : 스크린골프장 요금 규정 추가
  -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단위:원)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명순)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 7. 수정안 요지

- 안 제11조제1항 별표1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비고란 중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 을 삭제하고,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으로 수정함.

###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526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6. 1. 19.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11조제1항 별표1 기호(-)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비고란 중 “이용료 할인 규정” 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조례 제14조제1항 이용료 등의 감면 규정과 상호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기이용의 세부기준 및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내용

-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비고란 수정(안 제11조제1항 별표1)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 기호(-)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비고란 중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을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으로 한다.

[붙임 2]

##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별표1 -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div>				별표1 -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div>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생략) • <u>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u>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개정안과 같음) • <u>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u>
	1인/18홀/1회	20,000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u>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u>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1. 09.
- 회부일자 : 2026. 01. 12.
- 상정일자 : 2026. 01. 19.

### 2. 제안이유

- 신설된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3. 주요내용

-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안 제11조1항 별표1) : 스크린골프장 요금 규정 추가
  -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단위:원)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 나. 입법의 취지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중 스크린골프장의 이용료(1인/9홀/1회 12,000원, 18홀 20,000원)와 GDR연습장 이용료(1회/1시간, 15,000원)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과 예약방법 등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료 신설 및 이용 기준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의 이용료는 주민 간 형평성에 맞게 징수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주민의 재산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군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제11조제1항 별표1의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과 같은 포괄적인 위임 방식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 규정과 상호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집행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내부 지침 또는 이용약관이 아닌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시에는, 이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은 군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 □ 수정의견

- 이용료 할인 별도 규정 삭제(추후 방침 결정 후 개정)

## 제 출(안)

비고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수정의견

비고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집행기관] 질의 및 내용 문의

경상남도 고성군 (김\*향) | 2025. 7. 14.

수고많으십니다.

새로 들어설 체육시설의 이용료의 감경에 대해 해당 시설 이용객 전체에 대해 감경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경상남도 고성군의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 시 담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례는 개정 전 예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감면사항을 정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설 체육시설만 시행령 및 조례의 감면사항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두게 된다면 근거가 되는 상위법 및 조례와 상충하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합니다.

답변쓰기

↳ 댓글 법제처 (전\*영) | 2025. 7. 15.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하여 정하면서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에게 감면사항뿐 아니라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 지은 특정시설만을 대상으로 감면사항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과 평등원칙 면에서 자치단체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판 및 유선통화를 통한 자치법제상담은 자치입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및 별도의 법적검토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답변드린 사항은 담당자의 실무차원의 의견일 뿐 법제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0

[질의 요약]

질의) 새로 들어설 체육시설만 조례의 감면사항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는지?

답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감면 할 수 있는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하여 정하면서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에게 감면사항뿐 아니라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 지은 특정시설만을 대상으로 감면사항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과 평등원칙 면에서 자치단체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sup>1)</sup>

---

1)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6. 21.>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1.>
-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8.][제59조에서 이동 <2021. 1. 5.>]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개정 2016. 6. 21., 2021. 4. 6.>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 6. 21.>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3. 5. 23.>[전문개정 2008. 12. 24.]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5. 12. 22.>[전문개정 2008. 3. 2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개정 2012. 1. 26., 2023. 5. 23.>[전문개정 2008. 12. 24.]

####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2.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하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3.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① 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 참고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이용료 등의 감면)**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2023.11.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라. 평창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 전지훈련 목적으로 방문한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사.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신설, 2023.11.24.>

####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다. 가·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신설, 2023.11.24.>

###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카. 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타.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신설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

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6
----------	-----

제출년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신설된 스크린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2. 주요 내용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안 제11조1항 별표1) : 스크린골프장 요금 규정 추가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1. 25. ~ 2025.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655호, 올림픽체육과-10974(2025. 11. 24.)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8119(2025. 11. 17.)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8119(2025. 11. 17.)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42349(2025. 11. 19.)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0362(2025. 12. 24.)호]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중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단위:원)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b>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 관련)</b></p> <p>○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span style="float: right;">(단위:원)</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체육시설</th> <th style="width: 10%;">이용료</th> <th style="width: 10%;">사용료</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d rowspan="1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td> </tr> <tr> <td>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r> <tr> <td rowspan="2">체육관</td> <td>국민체육센터</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0</td> </tr> <tr> <td>기타 실내체육관</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10,000</td> </tr> <tr> <td>테니스장(1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5,000</td> </tr> <tr> <td>공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 외)</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td> </tr> <tr> <td>족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야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풋살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골프연습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전천후)</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실외)</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r> <tr> <td>파크골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실외 농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r> </tbody> </table>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b>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 관련)</b></p> <p>○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span style="float: right;">(단위:원)</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체육시설</th> <th style="width: 10%;">이용료</th> <th style="width: 10%;">사용료</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d rowspan="1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td> </tr> <tr> <td>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r> <tr> <td rowspan="2">체육관</td> <td>국민체육센터</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0</td> </tr> <tr> <td>기타 실내체육관</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10,000</td> </tr> <tr> <td>테니스장(1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5,000</td> </tr> <tr> <td>공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 외)</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td> </tr> <tr> <td>족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야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풋살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골프연습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전천후)</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실외)</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r> <tr> <td>파크골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실외 농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span style="float: right;">(단위:원)</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이용구분</th> <th style="width: 10%;">이용료</th> <th style="width: 6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스크린골프장</td> <td>1인/9홀/1회</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 <td rowspan="2">· 략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td> </tr> <tr> <td>1인/18홀/1회</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GDR연습장</td> <td>1회/1시간</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body> </table>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략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략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실내체육시설의 일부이용 및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일반 체육시설	개인	1,200	· 2시간 기준임 · "단체"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회권	10,000	
1개월권	90,000	
3개월권	240,000	
6개월권	420,000	
12개월권	720,000	

○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일	4시간	조기/야간 4시간	
체육경기	180,000	72,000	108,000	· 1일 : 09:00부터 18:00까지 · 조기 : 05:00부터 09: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 · 배드민턴, 탁구장 등 기타종목 사용을 위한 일일입장 시 1인당 요금 이용시간 등은 일반체육시설 이용료 및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체육활동	420,000	168,000	252,000	
일반행사	600,000	240,000	360,000	

※ 체육활동이란 동아리, 모임 등의 비공인 체육활동을 뜻하며 운동회, 체육대회 등은 일반행사로 한다.

○ 실내체육시설의 일부이용 및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일반 체육시설	개인	1,200	· 2시간 기준임 · "단체"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회권	10,000	
1개월권	90,000	
3개월권	240,000	
6개월권	420,000	
12개월권	720,000	

○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일	4시간	조기/야간 4시간	
체육경기	180,000	72,000	108,000	· 1일 : 09:00부터 18:00까지 · 조기 : 05:00부터 09: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 · 배드민턴, 탁구장 등 기타종목 사용을 위한 일일입장 시 1인당 요금 이용시간 등은 일반체육시설 이용료 및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체육활동	420,000	168,000	252,000	
일반행사	600,000	240,000	360,000	

※ 체육활동이란 동아리, 모임 등의 비공인 체육활동을 뜻하며 운동회, 체육대회 등은 일반행사로 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생활체육시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연락처	(033) 330 - 2018